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하태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03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0. 6.

발 의 자 : 하태경 · 이종배 · 조해진
황보승희 · 한기호 · 이명수
태영호 · 김태호 · 정진석
이주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 영주권 취득 후 단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외국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이지만, 지방정치의 핵심인 선거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주민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, 영주권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2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제3호 중 “3년이 경과한”을 “7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인 선거권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선거권) ① (생 략)	제15조(선거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	② -----
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	-----
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-----
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	-----
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	-----
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	-----
다.	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	3. -----
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	-----
후 <u>3년이 경과한</u> 외국인으로	----- <u>7년 이상 계속</u>
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	<u>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</u>
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	<u>는</u> -----
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	-----

